

#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대학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 및 위치)** 본 센터는 예원예술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고 입학홍보처 내에 둔다.<개정 2021.7.22>

**제3조(용어 정의)** 이 규정에서 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.

**제4조(사업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 교수·학습지원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도우미 선발·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사항

## 제2장 조직

**제5조(기구)** 센터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, 사업 운영에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6조(구성)** 센터에는 센터장, 조교를 두며, 필요에 따라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

**제7조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8조(간사)** ① 간사는 센터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.

② 간사는 본교 직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## 제3장 위원회

**제9조(장애학생지원위원회)** ① 장애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지원에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장애학생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직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이 보직자인 경우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0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장애학생 복지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장애학생 지원관련 중요 사항

**제11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과반수이상

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비밀엄수의 의무)**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#### 제4장 재정 및 회계

**제13조(재정)** 센터의 경비는 정부부처지원금, 참여기관출연금, 교내지원금, 사업수익금, 기부금, 찬조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
**제14조(회계년도)**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#### 제5장 보칙

**제15조(시행규칙)** 이 규정 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2. 6. 19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7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